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99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」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
2019년 2월 25일

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13 호

##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임원)제2항 중 “임명하되, 이사장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” 를 “시장이 임명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(이사)제1항 중 “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 1인은” 을 “이사장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제4항 을 삭제한다.

제14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제1항제2호 중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9. 2. 23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실장 김 광 찬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8조(임원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임원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<u>임명하되, 이사장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단.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</p>	<p><b>제8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임원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<u>시장이 임명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단.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9조(이사) ①</b><u>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<b>제9조(이사) ①</b><u>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임원의 직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·②·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<u>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⑤·⑥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임원의 직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·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&lt;삭제&gt;                      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2. <u>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                      3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·③ (생략)</p>	<p><b>제14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 ①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2. <u>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                     3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